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도희재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○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(보조금) 지원 가능(안 제4조)

○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지원 제한(안 제6조)

○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 및 제7조
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○ 기 타 : 조례안예고(2019. 8. 26 ~ 2019. 8. 30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고, 지역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자발적인 봉사활동 보장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